

서울수서경찰서

제 2025-02313 호

2025. 6. 20.

수 신 : 양유진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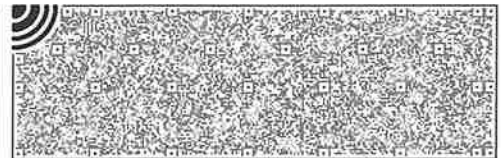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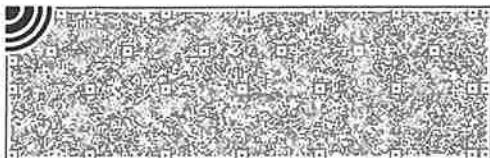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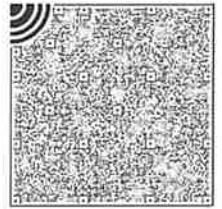
접수일시	2025. 4. 23.	사건번호	2025-004724
죄명	강간		
결정일	2025. 6. 20.		
결정종류	불송치 (혐의없음)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여성청소년수사1팀 경감 김성현		☎ 02-2155-9249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서울수서경찰서장





【 별지 】

【 결정 종류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1. 피의사실의 요지

- 1) 피의자는 2023. 12. 4. 16: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21, 302동 1105호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잠옷과 속옷을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 2) 피의자는 2024. 9. 14.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4길 2-6 '아이다'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안은 채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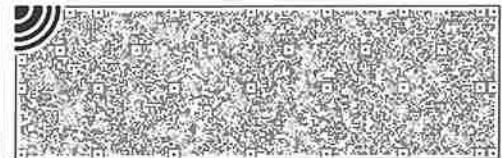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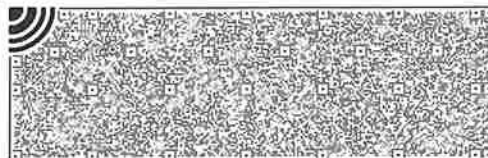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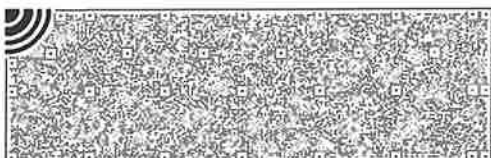
2. 불송치 이유

○ 범죄 사실 1)항

-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관계 당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이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범죄 사실 2)항

-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해 장소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후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만으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 부족하다

- 피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SNS에 데이트 사진을 게시해 달라고 하며 비용을 정산해 달라는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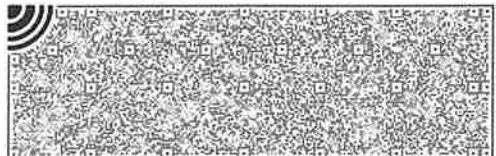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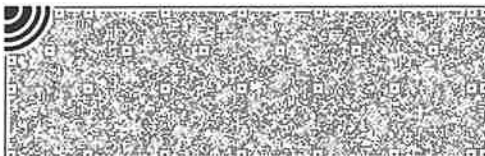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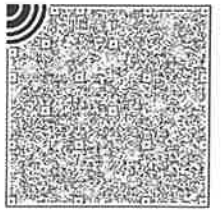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은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 >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조사 접속 링크]

설문조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며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